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356호
2. 발 의 자 : 유형찬 의원
3. 발의일자 : 2023. 10. 16.
4. 회부일자 : 2023. 10. 23.

II . 제안이유

1. 최근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로 ‘자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서울시의 학생자살예방 관련 조례는 자살예방 및 사후관리에 대한 체계는 물론 사후지원 협력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재한 실정임.
2. 이에 학생자살 이후 가족, 주위 학생, 교직원 등의 사후관리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자 사후관리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 홍보 및 캠페인 등, 사전 상담 서비스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자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학생자살 예방계획상 사후 대응체계 및 홍보, 캠페인 구축에 대한 예방계획 조항을 규정함(안 제4조).
2. 학생자살예방 담당 교사 교육에 있어 상담 서비스 및 전문가 컨설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학생자살 예방계획에서 규정한 가족 등에 대한 사후지원을 조항 명칭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상담 및 심리치료 등에 대한 학교장의 지원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
4. 학생 자살예방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위한 교육감의 생명존중문화 환경조성 및 확산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11조).
5. 자살예방 및 사후 지원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함 (안 제12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3. 기 타

○ 입법예고(2023. 10. 26. ~ 10. 30.) 결과 : 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16일 우형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356호로 발의되어 2023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자살 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¹⁾ 코로나19 이후 고립감 확산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환경 변화로 자살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금년 4월에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 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하였으며,

서울시교육청은 금년 2월에 수립한 ‘학생자살예방 추진 계획’에 따라 학생 대상 생명존중교육을 연간 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학생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년 서울시 관내 자살 학생은 10월 기준 33명으로 이미 작년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1) 보도자료: 한국 자살률, OECD 1위...2위와도 압도적 격차 '쏟아짐'(머니투데이, 2023.5.28.)

[표] 최근 3년간 서울시 학생 자살 현황

연도 학교급 유형별	2021				2022				2023(10월 말)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우울증	0	0	6	6	0	1	6	7	0	2	9	11
가정문제	1	2	2	5	0	3	3	6	0	5	3	8
성적문제	0	0	3	3	0	2	4	6	0	0	1	1
이성문제	0	2	0	2	0	0	1	1	0	1	0	1
원인불명	0	1	6	7	0	1	7	8	1	5	3	9
기타	0	1	4	5	0	1	1	2	0	2	1	3
합 계	1	6	21	28	0	8	22	30	1	15	17	33

○ 이와 같이 학생자살예방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 동 개정조례안이 사후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교육환경 전반에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학생의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나. 조문별 검토

1) 학생자살 예방계획 등(안 제4조)에 대한 검토

○ 안 제4조제6호 및 제7호에서는 교육감이 매년 수립·시행하는 학생 자살예방 계획에 ‘사후 대응체계 구축 및 관련자 지원 대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구축’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에서 자살 사안이 발생하면 남은 구성원은 심리적 혼란, 불안, 우울, 불면과 같은 증상을 경험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과적 문제를 겪거나 자살의 위험성이 높아지기도 하는바,²⁾

안 제4조제6호가 사후 대응체계를 통해 학교 구성원의 또 다른 자살 위기를 예방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되고, 안 제4조

2) 보도자료: 자살 사후 대응 전문가 양성한다(세계타임즈, 2023.5.11.)

제7호 또한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측면³⁾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학생자살예방 담당 교사 교육(안 제8조)에 대한 검토

- 안 제8조제2항에서는 학교장이 지정한 학생자살예방 교육 담당 교사에게 상담 서비스,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개입 및 대처방안과 대화법 등 게이트 키퍼⁴⁾로서의 역할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바

안 제8조제2항에서 학교장이 담당 교사에게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담당 교사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자살예방사업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가족 등에 대한 사후지원(안 제9조)에 대한 검토

- 안 제9조에서는 제목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을 ‘가족 등에 대한 사후지원’ 으로 수정하였는바 동조는 당사자 및 가족 등에게 미치는 영향 완화, 생활의 평온 유지를 위한 배려 등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아울러 안 제9조제2항에서는 학교장이 자살시도학생 및 자살학생의 가족, 주위학생, 교직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3) 보도자료: 여주시, 시민을 위한 생명존중문화 확산이 자살 감소 이끌었다(경기헤드라인, 2023.12.1.)

4) 자살 위험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해 전문기관의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위급상황에서 자살 위험 대상자의 자살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사람(네이버 지식백과).

이는 당사자 및 가족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에 대한 심리 지원을 통해 자살 사안이 발생한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 구성원의 빠른 일상생활 회복과 안정을 통해 또 다른 자살 사안의 발생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생명존중문화 환경조성(안 제11조)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2조) 에 대한 검토

○ 안 제11조에서는 교육감이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생명존중문화 환경조성·확산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2조에서는 교육감이 학생 자살예방 및 사후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학생회 등 학생 주도의 온·오프라인 자살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및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향후 서울시교육청이 홍보·캠페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학생자살예방 사업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혔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5379, 2023. 10. 27.).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팀장	정진국 02) 2180-8263	입법조사관	김한수 02) 2180-8269
--------	----------------------	-------	----------------------